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공공연하게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즉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를 말함.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말함.

공연한 판매 [특허]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판매되는 경우를 말함.

공연한 실시의 증거조사 신청 절차 [특허]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신청 절차.

공연한 실시 [특허]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

공연한 사용 [특허]

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경우를 말함.

공연실시 [지재권일반]

특허사유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공연 사용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미 특허법 제102(b) 위반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공연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특허제품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야 함.